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배분기일 통지

아래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해 배분기일을 지정하였으니,
년 월 일까지 확정된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근거: 「국세징수법」 제95조제2항).

체납자	성명 (상호)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소 (사업장)		
처분청			
매각재산의 표시			
매각대금			
배분일자	년 월 일		
배분장소			
차액납부 해당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함	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하지 않음

끝.

발신명의 직인

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: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 구분

공지사항

1. 제출서류: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서, 채권입증 서류 사본

2. 절차안내

- 가. 배분기일 7일 전부터 배분계산서 원안, 교부청구서, 감정평가서,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서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나. 배분기일에 출석하는 채권자 또는 채납자는 채권원인서류 원본(채권입증서류, 설정계약서, 임대차계약서, 명도확인서 등),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- 다.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 1통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 다만,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인감확인서,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라.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한 채권자는 배분기일까지의 확정된 채권액 또는 채납액을 신고해야 합니다.
- 마. 배분금은 신고된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하며,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한정합니다.
- 바. 배분 후 잔여채권이 있음을 사유로 채권원인서류를 환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서환부신청서를 제출(채권원인증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)해야 합니다.
- 사. 배분대상 채권자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채납자는 배분기일 7일 전부터 서면으로 배분이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아. 배분이의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금 지급을 유보하고,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배분금을 지급합니다.
- 자. 배분기일에 채권자 또는 채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하게 됩니다.
- 차. 매수대금 차액납부의 경우 매수인은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분기일에 매수대금으로 납부(매수인에게 배분될 금액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 제기 금액도 납부)해야 하고,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.